

수원지방법원 2020. 11. 25 선고 2020가단1787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
본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4,474m² 중 231/4,47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0. 3. 12. 접수 제20271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20. 5. 31.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곽용헌

별지